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현황과 과제

강승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국내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50년이 넘었고 이와 함께 한국어 학습자의 수도 놀랄 만큼 증가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사[1]가 국내외적으로 절실하다. 전문적인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한국어 교사의 양성은 한국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 혹은 강사들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주요 대학 부설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사 혹은 강사를 채용할 당시부터 관련 학문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해 왔다. 비교적 한국어 교육의 양적 확대가 일어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어 교사 혹은 강사의 자격을 제한해 온 것은 대학 부설 교육 기관에 한국어 교육 과정이 개설됨으로써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 강사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이 별도의 전공 분야로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국어학을 비롯한 언어학, 언어교육, 교육학

1)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대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명칭은 '한국어 교원'이라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사용하는 '교사', '강사' 등도 '한국어 교원'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등 관련 학문의 배경을 갖춘 석사 학위 학력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학력을 학사 학위 소지자로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검토에 앞서 한국어 교원에 대한 명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제도 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교사', 이들을 위한 자격증은 '교사 자격증'으로 불린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어 교사', '한국어 교원', '한국어 지도자', '한국어 교육자' 등의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국어기본법'에서는 이들을 '한국어 교원'으로 칭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제도 교육의 담당자들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장관)가 부여하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로 '교사'라고 불리는 데 반하여 한국어 교사들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2] 내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말(국어)을 가르치는 자, 즉 '국어 교사'와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한국어 교사에 대해 가르치는 대상을 중심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전문적인 훈련 과정 혹은 재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사들에게 공식적인 자격증을 부여하게 된 것은 한국어 교사 고유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제도적 보완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3]

---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등)의 내용 참고.

3)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크게 국어기본법 시행 이전의 연구(최은규 2002)와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의 연구(김준 2006, 채완 2006, 송향근 2007, 최주열 2008, 오광근 외 2009) 등이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 보고서로서 오광근 외(2009)에서는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정착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현황을 살펴본 후 향후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2.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역사적 고찰

국내 한국어 교육이 정부 주도의 공적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 부설 교육 기관에서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역시 정부 주도의 공적 형태로 개설되지 않고 일반 대학의 학위 과정, 혹은 대학 부설 교육 기관의 비학위 과정으로 개설되었다. 이에 대해 조항록(1997: 115~118)은 한국 내 한국어 교사[4] 연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가지 큰 흐름으로 역사적 고찰을 하고 있다.

첫째, 한국 내 한국어 교사 연수의 시작 시점에 대해 1980년대 초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의 개설[5]과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과[6]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련 과목 1강좌가 개설된 예를 들어 1980년대에 한국어 교사 연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보고 있다.

---

4)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용한 '한국어 교사'라는 명칭은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공포 이후 사용하게 된 '한국어 교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이전이므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기로 한다.

5)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은 1982년 12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1983년 1학기에 개설하였으나 전공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학생 모집에 실패하여 전공을 폐지하였고, 1997년 2학기에 재개설하였다.

6)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과의 경우 1974년에 설립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개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전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어교육과' 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련 과목이 개설된 것이다.

둘째, 국내 한국어 교사 양성과 재훈련 과정으로 서강대학교에서 실시한 한국어 교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선구적 역할을 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1990년 당시 국내 유일의 한국어 교사 양성 및 훈련 기관으로 1994년 연세대학교 한국어교사연수소의 설립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 한국어 교육 기관이 아닌 정부 유관 기관으로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를 담당한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현 국립국제교육원)과 문화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을 들고 있다.

다섯째, 1997년 주요 대학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도자 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등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이 확대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2000년 이전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 대학과 대학원의 학위 과정으로 개설된 경우는 학부에 3개 과정[7], 대학원에 7개 과정뿐이다. 2000년 이후 교육대학원 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개설된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2011년 현재 교육대학원에 26개, 일반대학원에 45개의 과정이 개설될 정도로 증가하였다.

국내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할 때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연구 활동이 있다. 2000년부터 5년간 시행된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4개 분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한국어 교육 분야 혹은 관련 분야의 학자, 연구자, 현장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수행된 전무후무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다. 그중 교육 · 연수 분과의 세부 과제 중 '한국어 교사 자격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한국어 교사들에게

7) 197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학과, 1999년 경희대 동아시아어학과군 한국어 전공, 숙명여대 국제 한국어 전문 과정 등이다.

공식적인 자격 부여를 하게 되는 제도 마련에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이후 2003년 '한국어 교사 인증제 평가 문항 개발과 인증제 시행 결과 분석 연구', 2004년 '한국어 교사 인증제 분석 및 한국어 교육 능력 영역별(읽기, 문법) 평가 연구' 등으로 이어져 2005년에 국어기본법의 입법안이 통과되고 같은 해 7월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어 교원에 대한 인증제 시행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2006년부터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7월에 발표된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한국어 교원 양성 제도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어 교원에 대한 공식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요청하는 행정 조처라 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1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어 교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자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1~3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현황

국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은 크게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교육대학원 포함)에 개설된 학위 과정과 대학 부설 교육 기관에 개설된 비학위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1. 학위 과정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대학의 학부,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학위 과정으로서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은 매우 다양한 전공 명칭으로 개설되고 있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1983년에 개설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시작으로 26개 교육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 및 전공이 개설되고 있다. 이들 과정은 대부분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과/전공)'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의 경우, 교육대학원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다양한 전공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어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부' 등의 전공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학교들이 건국대를 비롯한 17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혹은 전공)'에서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가톨릭대를 비롯하여 9개 학교들이다. 그 외에는 매우 다양한 전공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협동 과정'의 형태로 개설된 학교도 있

어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부의 경우, '한국어교원과', '국제한국어교원', '국제한국어교원학과' 등과 같이 '교사' 혹은 '교원'이 학과 명칭에 사용되고 있는 학교도 있으며 대부분은 '한국어(학)과' 등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 '문화'를 포함한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언어문화학과', '한국문화정보학과'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지평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다문화'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학교도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도 있다.

〈표 1〉 국내 학위 과정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8)]

유형	전공명	학교명
교육 대학원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 전공,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학과	경인교대, 고려대, 순천대, 숭실대, 충남대, 한남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톨릭대, 한양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경희대, 고신대, 군산대, 동아대, 배재대, 부산외대, 상명대, 선문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과	강원대, 충북대
	국어국문학과	대구가톨릭대, 부경대
	초등국어교육	진주교대
대학원	국어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 국어국문학부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관동대, 대진대, 동국대,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대, 중앙대, 청주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남대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경희대
	글로벌한국학	경희사이버대
	한국학과	상명대, 선문대, 이화여대
	한국언어문화학과	건국대

8) 〈표 1〉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의 자료를 교육대학원, 대학원, 학부의 전공 명칭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유형	전공명	학교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건양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협동 과정 학과,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과	가톨릭대, 계명대, 공주대, 배재대, 이화여대,부산대, 부산외대, 영남대, 호남대
	한국어문학과	광주여대, 한성대
	한국어학과	대불대, 동덕여대, 중부대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과	서울대, 인하대, 한양대
	한국학협동과정	연세대
	언어정보학 협동 과정	연세대
	한국어지도학과	우석대
	한국어교육학 협동 과정	전남대
학부	한국어교원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경동대, 경주대
	대외한국어교육	경북외대
	한국어학과, 한국어학, 한국어학부, 한국어과	경희대, 경희대(학), 동신대, 사이버한국외대, 우석대, 중부대, 평택대(학), 호남대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언어문화학과	경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선문대, 원광디지털대
	한국문화정보학과	계명대
	한국어한국학과	대구대
	한국어문학부, 한국어문학과	대구한의대, 부산외대, 세명대
	국제한국어교육학과	대불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배재대, 서강대(학), 선문대(천안캠), 숭실대, 순천향대 평생교육원(학),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외대
	한국어다문화교육학부	한중대
	국제문화학과	화신사이버대

- '~학과', '~전공' 은 같은 것으로 분류
- '~대학교'는 '~대'로 '~교육대학교'는 '~교대'로 분류
- 학교명란의 '~(학)'은 '학점은행제'로 개설된 학교임.

3.2. 비학위 과정

국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중 주로 대학 부설 교육 기관 혹은 평생 교육 기관 등에 개설된 비학위 과정이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대상 과정이 된다. 오광근 외(2009: 10)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009년 당시 운영 주체에 따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수는 전체 78개 과정으로 조사되었으며[9] 이들 중 대학에서 개설된 과정이 73개, 공공 기관 1개, 민간 및 사설 기관 4개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중 3개 과정은 온라인 형태로, 75개 과정은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2〉에 제시된 비학위 과정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은 각 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정의 명칭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들 중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과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상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사의 명칭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한국어 지도사', '한국어 강사', '다문화 언어 교사', '한국어 교육 전문가', '한국어 교육자',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자'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대학 부설 교육 기관에서 개설되는 과정이고 사설 혹은 민간 기관에서 개설되고 있는 일부 과정이 있다.

〈표 2〉 국내 비학위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10]

과정명	기관명
한국어 지도사	(사)여성정책연구소/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건양대 평생교육대학, 청주대 평생교육원

9) 2006년 3월 당시 31개 과정으로 집계되었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 2009년 12월 당시 78개 과정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3년 동안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오광근 외, 2009: 9 참고).

10) 〈표 2〉는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의 자료를 비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각 기관의 과정 명칭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과정명	기관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도자 과정	서울대 사범대학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메네지먼트코리아/OA평생교육원, 제이케이글로벌평생교육원, 한국평생교육인재개발원, 건국대(충주캠퍼스) 언어교육원, 건국대 언어교육원, 경동대 국제어학원, 경북대 한국어문화원, 경인교대(경기캠퍼스) 평생교육원, 경희대 국제교육원(국제캠퍼스), 계명대 국제교육센터,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고신대 평생교육원, 공주대 국제교육원,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 광주여대 사회개발연구원, 국어생활연구원, 국제복지평생교육원, 국제신학대학원대 사회교육원, 단국대 국제어학원, 부산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 서울대 언어교육원, 선문대 한국어교육원, 성신여대 국제문화교육원, 세명대 한국학센터, 순천향대 한국어교육원, 신라대 한국어교육센터, 우석대 한국어교육원, 울산대 국어문화원, 원광대 평생교육원, 원광보건대학 평생교육원, 인하대 평생교육원, 전남대 언어교육원, 전북대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전주기전대학 평생교육원, 제주대 평생교육원, 조선대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주)엠비씨아카데미, 청출어람, 침례신학대 평생교육원, 한남대 한국어학당, 한밭대 평생교육원, 한중국제교류센터, 호서대 산업문화교육원, 화신사이버대 평생교육원
한국어 강사 연수 과정	㈜한중문화교육교류원
한국어 강사 양성 과정	국민대 국제교육원, 부산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외대 대학원 국제센터, 신라대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재)글로벌에듀한국어교육원, 가톨릭상지대 평생교육원 어학원, 강남대 국제어학교육원, 강원대(삼척캠퍼스) 평생교육원, 강원대 한국어문화원, 경상대 국어문화원, 계명대 국제교육센터, 고신대 평생교육원, 군산대 국제교류교육원, 김천대 국제어학원, 대구가톨릭대 어학교육센터, 대불대 평생교육원, 대한고시연구원, 동국대(경주캠퍼스) 국제교류교육원, 동국대 한국어교육센터, 동아대 국어문화원, 동의대 외국어교육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국제언어교육원, 마산 여성인력개발센터, 마이한글닷컴, 목원대 국제교육원, 부산대 국제언어교육원,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삼육대 사회교육원, 상명대 한국언어문화교육원, 상지대 평생교육원, 서울교대 평생교육원, 서울대 평생교육원, 서울시립대 서울시민대학, 성결대 언어교육원, 성균관대 성균어학원, 아주대 한국어학당, 안양대 평생교육원, 영남대 국어문화원, 영동대 사회교육원, 울산대 산학협력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덕대 어학교육원,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인제대 한국어문화교육원, 인천대 한국어학당, 인천시 평생학습관,

과정명	기관명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전남대 국어문화원, 전주대 한국어문화원, 진주교대 평생교육원, 창원대 국제교류원, 청강문화산업대학 평생교육원, 총신대 한국어학당, 청주대 국어문화원, 충남대 한국어교육원, 평택대 국제교육원, 한국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대전대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 한림대 국제교육원, 한서대 평생교육원, 한신대 평생교육원, 홍익대 국제언어교육원
다문화 언어 교사 양성 과정	포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전문가 과정	경북대 한국어문화원, 숙명여대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육자 과정	경희대 교육대학원 특별 과정
재외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한국어 교사 연수소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연세대 한국어학당
한국어 교원 3급 대비반, 한국어 교원 3급 단기 양성 과정	서울신학대 평생교육원, 이글 평생교육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자 양성 과정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한국어 강사	충남대 평생교육원, 충북대 평생교육원
한국어 교사 자격 인증 과정	영남대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4.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과제

국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나누어 전공 명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어 교원'이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전공' 등의 명칭을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학위, 비학위 과정의 전공 명칭 등은 불필요할 정도로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다.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이라는 명칭과 '한국어 교육'이라는 핵심적인 전공 명칭을 어느 정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 현상으로 볼 때 '외국어로서의'라는 수식어가 사용되는 것은 오히려 '한국어 교육'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어 교육'과 구별되는 '한국어 교육'으로 통용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이수 과목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것은 각 대학(원)과 대학 부설 기관 혹은 민간 사설 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양성 과정의 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이들 기관에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이수 과목들을 개설하고 해당 심사 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교과목 심사와 교육 과정 심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이수 과목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으나[11]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위 교과목 구성에 대한 필수 과목 선정 등이 검증적 절차를 거쳐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학위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역시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12]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서 외국인 한국어 교사 양성 부분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점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조차도 외국인 한국어 교사를 채용하기도 하며, 특정 국가 한국어 학습자들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한국어 교원 양성과 이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본다.

---

11) 국립국어원(2011)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가 수행되어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12)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비학위 과정의 경우는 해당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만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으나 대학 학부 과정이나 대학원(교육대학원 포함)에 개설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학위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일종의 무시험검정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넷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해마다 시험 시행 이후 시험에 대한 반응들을 검토하여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시행 교과목, 출제 방식에 대하여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응시해 온 응시자들의 시험 결과 등을 분석하여 평가 도구 자체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등을 검토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엄격한 관리와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학위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경우, 과정을 개설하는 기관의 양성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광근 외(2009: 108~109)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은 비학위 과정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인증의 첫 단계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있어 가장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대학 부설 교육 기관 및 민간 기관 개설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교육 과정 관리가 좀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초점은 전문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한국어 교원을 배출하는 데에 있으므로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의 한국어 교원들의 재교육 과정도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경력이 축적되어도 대상이 되는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어 학습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육 과정의 개발과 그에 따른 교재 개발 등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립국어원(2010),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권재일(2010), 《국외 한국어 교원 초청 연수 백서》, 국립국어원.

김선정 · 방성원 · 이동은(2010), 《국외 한국어 교원 (재)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 과정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김준희(2006),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의 실태와 전망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37~65.

민현식(2005), 한국어 교사론 -21세기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 《한국어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1~168.

박춘태 · 권연진(2011), 교원 양성 제도와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원 수급 제고, 《언어와 문화》 6-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63~182.

석주연(2002), 영국에서의 국제 영어 교사 양성 제도의 실태 및 시사점, 《국어교육연구》 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45~168.

송향근 · 김정숙 · 박동호(2007),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오광근 · 김유정 · 진대연(2009),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이동재(2002), 미국에서의 국제 영어 교사 양성 실태와 바람직한 교사 자질, 《국어교육연구》 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17~143.

정재훈(2002), 호주에서의 국제 영어 교사 양성 실태, 《국어교육연구》 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69~189.

조항덕(2002),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사 양성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9~234.

조항록(1997),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사 연수, 《한국어교육》 8, 107~130.

채련강(2002),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사 양성 실태, 《국어교육연구》 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91~115.

채완(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人文科學硏究》 12, 人文科學硏究所, 243~268.

최순희(2002), 중국에서의 대외한어 교사 양성 실태,《국어교육연구》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69~90.
최은규(2002),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의 실태 및 제안,《국어교육연구》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37.
최주열(2008), 한국어 교사의 육성과 위상 제고 방안,《한국어교육》1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9.
최태호(2009),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 및 지도 방법 연구,《새국어교육》82, 한국국어교육학회, 465~481.